

1. 개정이유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품질관리 인력의 전담 요건을 삭제하는 등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국토교통부령 제930호, 2021. 12. 23. 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품질인증 신청서류의 보완기간 연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품질인증 신청서류의 보완 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안 제2조)
- 나.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의 보완결과 확인 절차 규정(안 제13조)
- 다. 품질인증 심사기준 중 품질관리인력의 전담 의무 삭제(안 별표 1)
- 라. 품질인증 사업장심사 담당자 및 보조자의 요건 완화(안 별표 4)
- 마.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의 업무절차도 수정(안 별표 5)
- 바. 시료채취확인서 항목 중 기후조건을 삭제하고, 인증번호를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일”을 “30일”로,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 할 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연장 할”을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을 반려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 할 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단서 중 “운영실태 등의”를 “운영실태”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를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운영실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규칙 제16”을 “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완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및 규칙 제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등의 조사 수수료)”를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조사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실태 등

의”를 “운영실태”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

1) 생산시설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파쇄 · 분쇄 시설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추었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추었	1일 처리능력 4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추었
	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	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굵은골재), 5mm 이하(잔골재)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	골재 최대치수 20mm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
분리 · 선별시설	이물질 선별횟수 2단계 이상을 갖추었(인력 및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이물질 선별횟수 2단계 이상을 갖추었(인력 및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이물질 선별횟수 1단계 이상을 갖추었(인력 및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선별 시설 각 1식 이상을 갖추었(파쇄·분쇄 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선별 시설 각 1식 이상을 갖추었(파쇄·분쇄 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
건설 폐기물 야적시설	파쇄·분쇄 시설의 1일 처리 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었(제4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 보관시설	▪ 건설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부지 내에 1일 생산능력 기준으로 3일분 이상의 생산한 순환골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보관장소는 인증을 받지 않은 골재와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분저장이 가능하고 토분 및 이물질 등의 혼입방지가 가능하도록 할 것.		
	-	▪ 입도별 순환골재 보관시설(5mm 이하, 25mm 이하의 골재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고정된 시설)을 갖출 것	-
	-	▪ 바닥면은 평탄하고 경사(4%이상)를 유지할 것	▪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바닥면은 평탄하고 경사(4% 이상)를 유지할 것
계량시설	▪ 1식 이상을 갖출 것 (계근시설 등)		
굴삭기 등 주요 건설기계현황	▪ 버킷용량 0.6 세제곱미터 이상의 굴삭기 또는 로더 1대 이상을 갖출 것		

2) 품질관리인력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품질 관리 인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품질관리인력 1인 이상 확보할 것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서 규정한 초급품질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2.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에서 순환골재 품질관리 및 시험분야 경력을 인정받은 자		

3)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품질방침	▪ 경영자의 품질확보에 대한 방침을 설정·유지 할 것		
품질관리 조직 및 활동	▪ 품질관리 업무조직을 갖추어 것 ▪ 품질관리 수행절차를 갖추어 것 ▪ 년도별 품질관리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을 유지할 것 ▪ 골재의 생산을 위한 파쇄, 분리선별, 세척 및 혼합(필요시에 한함)등의 운전조건 및 관리규정을 갖추어 것.		
품질관리 실적	▪ 골재 품질관리계획서를 갖추어 것 ▪ 골재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실적을 유지할 것 ▪ 골재 판매 및 공급관련 서류를 기록·유지할 것		
품질관리 설비 및 능력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항 목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및 품 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을 갖출 것. <시험 항목> -입도 (KS F 2502) -이물질함유량 (KS F 2576) ▪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 의 입도분포기준에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 를 갖추어 것.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항 목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및 품 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을 갖출 것. <시험 항목> -입도 (KS F 2502) -밀도 및 흡수율 (굵은골재 KS F 2503 / 잔골재 KS F 2504) -이물질함유량 (KS F 2576) ▪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 의 입도분포기준에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 를 갖추어 것.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항목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및 품질관리인력의 시험능 력을 갖추어 것. <시험 항목>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KS F 2511)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 도의 입도분포기준에 맞 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어 것.
품질시험 및 관리계획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비치하되, 1년 중 1회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운영실태 조사 시 채취한 시료를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음.		

4) 환경 및 안전관리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환경 및 안전관리	▪ 경영자의 환경관리 방침을 설정·유지할 것 ▪ 환경관리 조직 및 수행절차를 수립할 것 ▪ 환경관리 실적 및 기록을 유지할 것 ▪ 분진·폐수·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유지할 것 ▪ 경영자의 안전관리 방침을 설정·유지할 것 ▪ 안전관리 조직 및 수행절차를 수립할 것 ▪ 안전관리 실적 및 기록을 유지할 것 ▪ 경영자의 환경방침을 이행할 수 있고,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수수료 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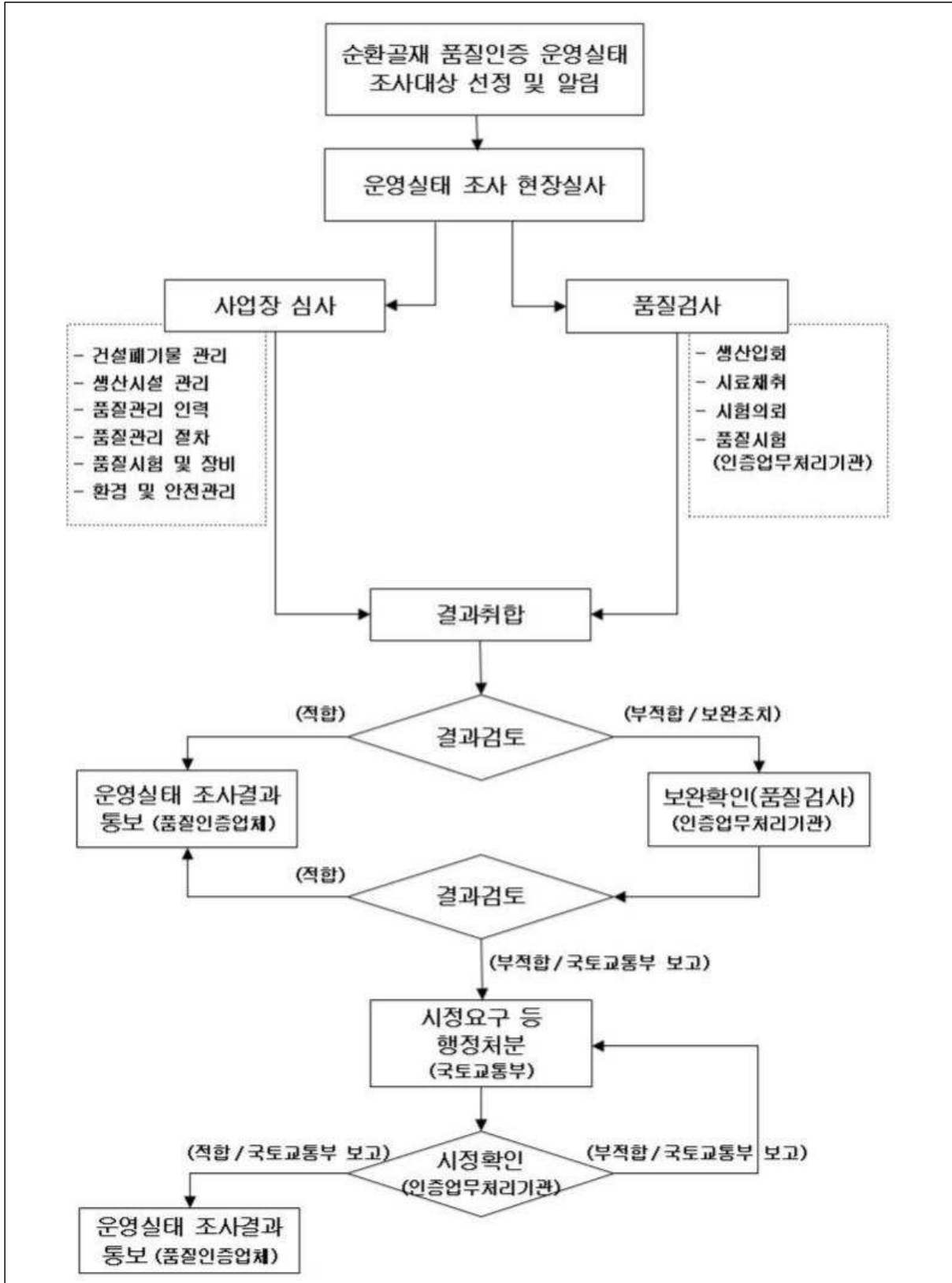
구 분		항목 및 내역
신규 신청 (1개용도)	가. 인건비	○ 품질인증 신청의 접수로부터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제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나. 경 비	○ 여비, 사무용품비, 전산처리비, 통신료, 관리비 등 기타 제경비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개최비용
	다. 일반 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 5%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신규신청 (2개용도)	가. 인건비 및 경비	○ 1개 용도 신청시 비용의 30%를 할증 적용한다.
	나. 일반 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 5%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운영실태 조사	가. 인건비	○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나. 경 비	○ 여비, 사무용품비, 전산처리비, 통신료, 관리비 등 기타 제경비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일반 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 5%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신규신청 (3개용도)	가. 인건비 및 경비	○ 1개 용도 신청시 비용의 60%를 할증 적용한다.
	나. 일반 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 5%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기 타		○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비용은 제외한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원의 인력편성기준

구 분	사 업 장 심 사	품 질 검 사
인 력	○ 업무 책임자 : 1인 순환골재, 건설폐기물 관련 연구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또는 토목·건축 분야의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동 업무에 종사한 자	
	○ 사업장심사 담당자 : 2인 이상 건설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골재, 품질, 건설폐기물 관련 연구 또는 인증 등의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품질검사 담당자 : 2인 이상 토목·건축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토목·건축전공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골재, 건설폐기물, 품질시험 관련 연구 등의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보조자 : 1인 이상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골재, 건설폐기물 관련 연구 또는 인증 등의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보조자 : 1인 이상 토목·건축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골재, 건설폐기물, 품질시험 관련 연구 등의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별표 5]

순환골재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 업무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인증신청서류의 보완) 인증 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 게 <u>10일</u>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u>신청자가 특별한 사 유로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 할 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연장 할 수 있다. <단서 신설></u>	제2조(인증신청서류의 보완) --- ----- ----- -- <u>30일</u> ----- ----- ----- <u>기한 내 보완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을 반려할</u> ----- ----- ----- <u>. 다만, 신청자가 특별 한 사유로 보완기간을 연장 요 청 할 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연 장 할 수 있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① ~ ③ (생 략)	제4조(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품질인증 심사의 경우 인증 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최소 5일 이상의 차이를 두고 2회에 걸쳐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이 중 1회는 인증업무처리 기관에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	④ ----- ----- ----- ----- ----- ----- -----

을 실시하고 1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을 제외한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되, 당해 인증신청용도와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시험기관은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1회에 한하여 채취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⑤ · ⑥ (생략)

제11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재심사)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재교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재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운영

실태 -----

----- .

⑤・⑥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규칙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규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 등에 관한 사항 등 품질인증 운영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가 제3조의 별표 1 또는 제4조의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등의 조사 수수료) ① 규칙 제18

제13조(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

① -----

----- 운영실태 -----

-----.

② -----

----- . 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완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및 규칙 제16-----.

<삭 제>

제16조(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조사 수수료) ①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품질인증 및 <u>운영실태</u> 등의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u>운영실태</u> ----- ----- ----- ----- --.
--	--